1-26	「중대재해처벌법」 개정(인과관계 추정조항 신설)	(4) 공정거래위원장

□ 권고 내용

○ 국회의장·법무부장관·고용노동부장관·환경부장관·**공정거래위원장**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의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피**해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해 인과관계 추정조항을 신설**하는 방향으로 **「중대재해처벌법」을 개정**하기 바랍니다.

□ 이행 현황

○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손해배상 피해 인정 요건을 완화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으므로, 권고 취지에는 적극 공감하나,

- 소송상 인과관계 인정은 개별 사안별로 법원에서 판단해 보아야 하는 사실관계 영역으로 법률로 일괄 추정하는 것이 민사법 체계에 적합한지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

□ 향후 계획

○ 해당사항 없음